

##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8일 (목) 15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 1면

(15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에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합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1.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호 의원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호 의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초광역행정산업위원님 여러분, 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기록물 관리 원칙과 연합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는 기록물의 활용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포상 규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하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0조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8일 신영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기록물 관리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을 대부분 다시 규정했으나, 주민의 측면에서 불편을 없애고 내용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21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은 시·도에 준용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은 없으며 기록관 설치, 심의회 구성·운영, 기록물 활용 등 주요 단체 위임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이하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수현 연합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은 현재 기준에서는 누가 하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현재 초광역자치과장이 주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기록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록관이라고 하면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기록관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나중에 기록관이라는 별도 인력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러면 기록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지금 구축해놓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현재는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중앙 부처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장님 외 인력은 따로 두지 않는 거고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현재는 기존에 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가 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형서 위원** 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안으로 구성해놓은 게 있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아직 이 부분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을 구축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반기마다 한 번?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가 다른 지자체나 광역에서 가동이 좀 되나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일반 지자체의 경우는 문서 이관이나 자료 정비할 때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시로 주요 문서가 발생될 때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우리가 조례상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를 여는 것을, 아직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게 많이 없어서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회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가 충청권 4개 시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충남은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만 운영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용은 없고 사안 발생 시 필요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충남에는 조례가 없는데 우리 충남 의원이신 신영호 의원님께서 광역연합 조례를 만드셨는데 충남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호 의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유인호 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신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 부분 우리 특지자체도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유인호 위원** 자체 해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제처나 행안부에?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 부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유인호 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위 법률 인용을 할 때 인용 내용이 적합한지는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록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특지자체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리상 문제가 좀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법률에 저희 특지자체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조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혹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셔서 향후에 또 유사한 조례들이 계속 제정이 될 때 어쨌든 그 회신을 받든지 법제처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하는 절차들을 한 번은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조례 관련해서 검토결과보고서 말씀해주실 때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이

게 가능하다고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검토보고서 쓸 때는 그냥 자의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이고 말씀드린 조항이,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개별 법령에 특지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약간씩 애매한 부분을 지적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유인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심의 전에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살펴줬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안건을 이 회의석상이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걸 추후에 살펴보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지자체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항들 중에서 저희가 담겨지지 못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자치조례라든지 연합 조례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수현 사무처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수현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선광**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형서 김선광 김현미 신영호 유인호 조성태

○청가 위원(1인)

안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하준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